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50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5019 판결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제2조 제1호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즉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이들의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목) 등과 같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은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예식장업을 위해 이 사건 웨딩센터의 신축공사를 한 피고가 그 예식장 영업을 예정된 시기에 개시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율하건설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예정된 시기에 예식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에 있었는데, 원고의 협조와 노력으로 피고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단서조항을 둔 취지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 적이 없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사는 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공사를 맡게 된 시점, 선행 공사의 완성 정도, 당시의 시공상 애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의 효력을 상실시킬 만한 약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이 원고의 그 단서조항 불이행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공사를 마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38,3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